

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이호대 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호대
(더불어민주당, 교육위원회)

-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선배·동료 의원 여러분!
구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호대 의원입니다.
「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
어문 규정에 맞는 용어 사용을 통해
조례 상 용어 사용을 일관성 있게 하여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,
자치법규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.

- 특히,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등
약칭하는 문구의 사용과
적용 대상을 학생의 학부모로 명확히 하여
주민이 명확하고 쉽게 조례를 인식할 수 있도록
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-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,
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
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